

제17장 환경

제17.1조 배경 및 목적

1. 당사국들은 지속 가능한 발전의 목적에 기여하는 방식으로 국제무역의 발전을 증진하겠다는 그들의 약속을 재확인하고, 이 목적이 그들의 무역 관계의 모든 수준에 통합되고 반영되는 것을 보장하기 위하여 노력할 것이다.
2. 당사국들은 경제발전, 사회발전 및 환경보호가 지속 가능한 발전의 상호 의존적이며 상호 강화적인 구성 요소라는 것을 인정한다. 당사국들은 무역과 지속 가능한 발전에 대한 전지구적인 접근방법의 일부로서 무역 관련 환경 문제에 관한 협력의 혜택을 강조한다.
3. 당사국들은 당사국들의 환경법을 조화시키는 것이 이 장에서의 그들의 의도가 아니며, 제1항과 제2항의 맥상 지속 가능한 발전을 증진하는 방식으로 그들의 무역관계 및 협력을 강화하는 것이 그들의 의도임을 인정한다.
4. 이와 관련하여, 당사국들은
 - 가. 각 당사국의 환경법의 준수와 효과적 이행을 증진하겠다는 그들의 약속을 인정한다.
 - 나. 생물다양성의 보전과 지속 가능한 이용, 그리고 생물다양성의 보전과 그 요소의 지속 가능한 이용에 관한 전통지식의 보존을 증진하도록 노력할 것이다. 그리고
 - 다. 환경문제에 대한 협력을 강화하고자 하는 그들의 의도를 재확인한다.
5. 어떠한 당사국도 이 장에서 발생하는 어떠한 사안에 대하여도 제22장(분쟁해결)을 이용하지 아니한다.

제17.2조 적용범위

이 장은 환경 문제에 관한 무역 관련 측면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서 당사국들이 채택하거나 유지하는 조치에 적용된다.

제17.3조 일반 원칙

1. 당사국들은 지속 가능한 발전의 목적에 따라 상호지지적 무역과 환경정책을 추구하기 위하여 노력하고, 생물다양성을 포함하여, 자국 자원의 적절한 이용을 증진한다.
2. 당사국들은 상대국의 천연자원에 대한 상대국의 주권적 권리를 재확인하고, 자국의 환경보호 수준 및 환경 발전, 정책 및 우선순위를 설정하고, 이에 따라 자국의 환경법, 규정 및 정책을 채택하거나 수정할 수 있는 자국의 주권적 권리를 재차 표명한다.

3. 당사국들은, 발전 수준의 차이와 현재 및 미래의 필요와 열망의 측면을 고려하면서, 이 장에서 그들의 약속을 준수하려는 그들의 의지를 재확인한다.

제17.4조 구체적 약속

1. 각 당사국은 자국의 법과 정책이 높은 수준의 환경보호와 자국의 천연자원의 지속 가능한 이용과 보전을 규정하도록 보장하기 위하여 노력한다. 각 당사국은 또한 그러한 사안에 대한 자국의 보호 수준을 지속적으로 개선하기 위하여 노력한다.

2. 당사국들은 자국의 환경법에서 부여된 보호를 약화시키거나 감소시킴으로써 무역 또는 투자를 증진하는 것이 부적절함을 인정한다. 이에 따라, 어떠한 당사국도 당사국들 간 무역이나 투자를 증진하기 위한 유인으로 그러한 법에서 부여된 보호를 약화시키거나 감소시키는 방식으로 그러한 법의 적용을 이탈하거나 이탈하겠다고 제의하지 아니한다.

3. 당사국들은 자국의 환경 법 및 정책을 자의적이거나 정당화할 수 없는 당사국들 간 차별의 수단을 구성하거나 무역 또는 투자에 대한 위장된 제한을 구성하는 방식으로 이용하는 것이 부적절함을 인정한다.

4. 당사국들은 자국의 환경법이 공정하고 투명한 대중 참여 메커니즘을 규정하는 것이 중요함을 인정한다.

5. 각 당사국은 자국의 법, 규정 및 정책이 자국이 당사국인 다자 간 환경협정, 그리고 지속 가능한 발전을 달성하기 위한 국제적 노력과 합치하며 이를 준수하도록 유지하기 위하여 노력한다.

제17.5조 법 집행

1. 당사국은 이 협정의 발효일 이후에 당사국들 간 무역 또는 투자에 영향을 미치는 방식으로, 작위 또는 부작위의 지속적 또는 반복적 과정을 통하여, 자국의 환경법과 규정을 효과적으로 집행하지 못해서는 아니 된다.

2. 이 장의 어떠한 규정도 한쪽 당사국의 권한 있는 당국이 다른 쪽 당사국의 영역에서 환경법규의 집행을 목표로 하는 활동을 수행하도록 권한을 부여하는 것으로 해석되지 아니한다.

제17.6조 절차적 보장

1. 각 당사국은 특정한 사안에 있어서 자국 법에 따라 인정된 이해관계를 가진 인이 자국 환경법의 집행을 위한 재판소에 대한 적절한 접근권을 가지도록 보장한다. 그러한 재판소는 행정, 준사법, 사법 또는 그 밖의 관련 재판소를 포함할 수 있다.

2. 각 당사국은 자국의 환경법 집행을 위한 그러한 재판소의 절차가 공정하고 공평하며 투명하도록 보장한다.

3. 각 당사국은 그러한 절차의 당사자들이 자국법상 자신의 권리의 집행을 보장하기 위한 구제를 추구할 수 있도록 규정한다.

제17.7조 투명성

당사국들은, 각국의 법에 따라, 당사국들 간 무역이나 투자에 영향을 미치는 환경 조건을 보호하는 것을 목표로 하는 조치를 투명한 방식으로 개발, 도입 및 이행하기로 합의한다.

제17.8조 환경위원회

1. 당사국들은 자국 행정부 내의 적절한 고위 공무원으로 구성되는 환경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설치한다.

2. 위원회는

- 가. 협력활동의 합의된 작업계획을 수립한다.
- 나. 합의된 협력활동을 감독하고 평가한다.
- 다. 상호 관심 있는 환경 사안에 대한 대화의 장 역할을 한다.
- 라. 이 장의 운영 및 결과를 검토한다. 그리고
- 마. 당사국들이 동의하는 경우에는 언제든지 자신의 기능상의 그 밖의 모든 조치를 한다.

3. 위원회는 이 장의 적용범위 내에 있는 그 밖의 모든 문제를 고려할 수 있고, 가능한 신규 협력 분야도 발굴할 수 있다.

4. 위원회는 공통 관심 사안을 논의하고 협력활동을 포함하여 이 장의 이행을 감독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회합한다. 회의는 직접 대면 또는 당사국들이 이용 가능한 기술 수단을 통하여 실시할 수 있다.

제17.9조 접촉선

이 협정의 발효일 후, 당사국들은 당사국들 간 의사소통을 원활히 하기 위하여 환경 사안을 위한 접촉선을 지정한다.

제17.10조 환경 협의

1. 이 장의 해석 또는 이행과 관련하여 발생하는 어떠한 사안도 당사국들 간 직접 대화, 협의 및 협력을 통하여 우호적이고 신의성실하게 해결한다.
2. 한쪽 당사국은 협의의 사유를 설명하는 서면 요청을 제17.9조에서 지정된 접촉선에 전달함으로써 다른 쪽 당사국에게 협의를 요청할 수 있다.
3. 당사국들이 자국의 접촉선을 통하여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는 경우, 그러한 사안은 위원회에서 논의될 수 있다.

제17.11조 협력

1. 당사국들은 상호 관심사에 대한 협력활동을 증진하는데 합의한다.
2. 당사국들은 협력활동이 다음을 보장하도록 노력한다.
 - 가. 각 당사국의 프로그램, 개발 전략 및 국가적 우선순위와 합치할 것
 - 나. 그러한 활동의 개발과 이행에 대중이 참여할 수 있는 기회를 창출할 것, 그리고
 - 다. 각 당사국의 경제 및 사법체계를 고려할 것
3. 이 장과 관련된 당사국들 간 협력 분야는 다음을 포함할 수 있으나, 이에 한정되지 아니한다.
 - 가. 환경 관리
 - 나. 다자간 환경협정을 포함한 환경법 집행을 위한 제도적 역량
 - 다. 청정 생산 기술
 - 라. 임업
 - 마. 수질
 - 바. 대기질
 - 사. 에너지 효율 및 재생에너지
 - 아. 이산화탄소 포집 기술을 포함하는 혁신적 환경 기술
 - 자. 기후변화 취약성 및 적응 평가 조치, 그리고
 - 차. 자국의 우선순위에 따라 당사국들이 합의할 수 있는 그 밖의 환경 사안